

청구/항변/반박 전략 문서

1. 사건 개요

1.1 원고 목표

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과 구상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소제기

1.2 핵심 사실

- 우방캐피탈이 2013.10.8. 개성금속에 10억원 대출(변제기 2015.11.30.), 김수경이 연대보증 및 공장건물·부지 담보 제공
- 개성금속이 2015.12.1. 부도,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2억 2,000만원 대위변제
- 공장용지 임의경매(2016.4.~2018.1.31.): 시가 11억원 → 낙찰 9억 6,000만원(배당받음)
- 김수경의 재산처분: 여의도 아파트(4억원→유재석 양도), 강남구 주공아파트(5억원→박수용 매도), 김포 토지(3억원→김수철 이전)

2. 당사자

2.1 원고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2.2 피고

피고
김수경
유재석
박수용
김수철
최종찬

3. 청구 마스터 표

3.1 청구권 개요

청구 ID	청구권	사건 종류	원고	피고
C-001	보증채무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김수경
C-002	보증채무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김수경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유재석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유재석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박수용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박수용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김수철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김수철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최종찬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최종찬

3.2 개별 청구권 상세 정보

C-001: 보증채무금 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대출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3. 10. 8.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개성금속'이라 합니다)과 대출금 1,000,000,000원, 변제기 2015. 11. 30., 약정이율 월 0.5%, 지연배상금률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주채무의 이행지체 및 원고의 배당금 수령 개성금속은 약정된 변제기인 2015. 11. 30.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 1. 31.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960,000,0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당시 원고의 대출채권은 대출원금 1,000,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0,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1,260,000,000원이었습니다. 3. 변제충당에 따른 잔존 채무의 확정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960,000,000원은 비용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0,000,000원에 우선 충당되었고, 남은 700,000,000원은 대출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개성금속의 잔존 대출원금은 300,000,000원(= 1,000,000,000원 - 700,000,000원)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존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받은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요소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 두 가지로 구성되며, 주채무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 이자채무, 지연손해금채무를 포함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공격방어방법이 되고, 주채무의 시효소멸 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함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을 제거하는 특약이며, 원고가 보증인 각자에게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해야 함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그 집행의 용이성을 증명할 수 있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이미 행사한 권리나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할 수 있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은 주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만으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방지할 수 없음
법률행위	[F-001]: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22]: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서증 목록	[F-001]: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E-008 (대출명세표)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22]: E-002 (배당표)

C-002: 보증채무금 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개성금속이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증거: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3. 대위변제 및 청구원금의 특정 개성금속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대출채권자인 신한은행에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누락되어 있고 전체 대위변제액 중 보증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입증 가능한 보증한도액인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청구하며, 추후 대위변제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 청구취지를 확장 내지 정정할 예정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확정된 보증책임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요소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보증인은 주채무에 대한 모든 항변이 보증채무에도 적용되는 부종성을 가지며,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로 족함 연대보증의 경우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한 전액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함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항변할 수 있음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며, 보증채무의 시효중단만으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방지할 수 없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각별로 정해짐
법률행위	[F-004]: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서증 목록	[F-004]: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김수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3. 10. 8. 소외 개성금속에 1,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개성금속은 2015. 11. 30. 대출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 1. 31. 공장용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 9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공제하더라도 김수경에 대하여 잔존 피보전채권 300,000,000원(원금 및 이자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1. 31. 피고 유재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장미아파트)을 가액 400,000,000원에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91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인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물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위 사해행위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주위적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의 현상 변경 등 원상회복 불능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액배상 상한액은 피보전채권액(300,000,000원), 잔존 공동담보가치(400,000,000원), 수익자 이익(400,000,000원) 중 최소값인 30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3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추정되지 않음. 다만 유일한 재산 매각 또는 무상양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책임재산의 감소), 주관적 요건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존재 필요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0]: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F-022]: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0]: E-0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F-022]: E-002 (배당표)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 31.자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1.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 31.자 대물변제계약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신용보증 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개성금속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신용보증약정서). 이후 개성금속의 대출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소외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 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대위변제금) 채권을 가지며,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1. 31. 피고에게 자신의 주요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여의도동 장미아파트)을 400,000,000원의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 등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외 김수경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주위적 청구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액배상) 만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00,000,000원이나,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잠정 특정액으로서 가액배상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가액은 향후 감정결과와 변론종결시 권리상태를 반영하여 보정하겠습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 매각, 무상양도, 대물변제 제공행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한 경우 또는 유일한 재산을 담보제공·대물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면 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제기 가능 대리인에 의한 사해행위의 경우 사해의사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본인의 사해의사가 있 으면 대리인의 인식 여부 불문
법률행위	[F-004]: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0]: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서증 목록	[F-004]: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0]: E-0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0. 8.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에 대출을 실행하였고, 소외 김수 경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2015. 11. 30. 대출금 1,000,000,000원에 대한 변제 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개성금속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1. 31. 공장용지 임의경 매 절차에서 960,000,000원을 배당받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여전히 소외 김수경에 대한 연 대보증채권은 잔존 원금 기준 300,000,000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위 원고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김수경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해당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 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수익자인 피고 박수용과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 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인 국민은행 채무(130,000,000원) 및 하나 은행 채무(50,000,000원)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100,000,000원)가 존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정산 시 위 채무들을 인수하는 등 법률관계 조정이 개입되었으므로 원물반 환 대신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30,000,000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공제되어야 할 선순위 담보권 및 임 대보증금 등 총 280,000,000원을 제외하면 잔존 공동담보가액은 150,000,000원입니다. 수익자의 이익 역시 매매대금 상당인 430,000,000원이고, 원고의 잔존 피보전채권액은 300,000,000원입니 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상한액은 피보전채권액, 잔존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 인 150,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가액은 향후 감정결과와 변론종결시 권리상태를 반영하 여 보정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가액배상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특히 통모가 이루어진 경우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여 제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즉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를 의미한다.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2]: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였다. [F-016]: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2]: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2]: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E-017 (不動産賣買契約書) [F-016]: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F-022]: E-002 (배당표)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김수경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7. 접수 제805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신용보증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개성금속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나.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김수경은 2017. 8. 31. 수익자인 피고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소외 김수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주위적 청구 (말소등기에 의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김수경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액배상)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선순위 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국민은행 130,000,000원, 하나은행 50,000,000원,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20,000,000원, 최상수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3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잔존 공동담보가액 및 수익자의 실질적 이익은 30,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2) 만일 위 선순위 담보권이 사후에 소멸하였거나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여 가액배상이 명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220,000,000원)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합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나 무상양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중개사무소를 통한 통상적 거래로 적정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 입증에 실패하면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함
법률행위	[F-004]: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2]: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였다. [F-016]: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서증 목록	[F-004]: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2]: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E-017 (不動産賣買契約書) [F-016]: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2017.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수경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0. 8.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에 자금을 대출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대출거래약정서). 이후 주식회사 개성금속은 2015. 11. 30. 대출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여 1,000,000,000원의 대출금

	을 연체하였습니다(대출명세표).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할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9. 24. 피고 김수철과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9757 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김수경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악의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의 2017. 9. 24.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물반환으로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객관적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의 존재,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제척기간 미경과 피보전채권의 존재만으로 족하며 확정판결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이행청구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불가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현실화된 경우 미발생 채권도 피보전채권 가능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 매각행위나 무상양도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됨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한 경우,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20]: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채무자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2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채무자 김수경에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김수경은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관련 대위변제 증거는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 김수경은 2017. 9. 24. 피고 김수철과 자신의 재산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2017. 9. 24.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채무자 김수경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7. 9. 26. 제3자인 소외 최종찬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처럼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인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가액은 향후 감정결과와 변론종결시 권리상태를 반영하여 보정하겠습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성립시기·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이익을 얻는 채권자에게 있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됨 피보전채권은 확정판결로 확정될 필요가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 이행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각됨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긍정함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일한 재산 매각행위나 무상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음
법률행위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0. 8. 주식회사 개성금속에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주식회사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대출거래약정서). 주식회사 개성금속은 2015. 11. 30.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대출명세표).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에 기한 확정적인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9. 24. 소외 김수철(수익자)에게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소외 김수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소외 김수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전득자(피고)의 악의 및 원상회복청구 가. 수익자 소외 김수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인 2017. 9. 26. 피고 최종찬(전득자)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456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선행 법률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로 판단되며, 전득자인 피고 최종찬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 전득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상회복은 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2017. 9. 24.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피보전채권은 그 존재만으로 족하며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인용될 수 없음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원칙이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여 제소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20]: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위 약정에 따른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은 2017. 9. 24. 소외 김수철과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9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김수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피고의 전득 및 악의 추정 수익자인 소외 김수철은 2017. 9. 26. 피고 최종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4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이며,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선행 사해행위에 기초하여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 매각행위나 무상양도행위의 경우 사해의사는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추정되며, 선의입증책임은 수익자

	에게 있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정상적 거래로 적정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선의 추정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분리하여 제기 가능하며,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 취소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야 하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가장매매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률행위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20]: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4. 예상항변 및 반박

신뢰도는 현재 확보된 사실, 증거, 법리의 연결 정도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이다. High는 바로 소장 및 준비서면 전략에 반영하기 좋은 수준, Medium은 기본 구조는 타당하지만 추가 사실 또는 증거 보강이 필요한 수준, Low는 방향성은 있으나 사실관계 또는 증거 연결의 추가 보강이 더 필요한 수준을 뜻한다.

C-001: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9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대출원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쟁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공격방어방법이 되고, 주채무의 시효소멸 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함 충족과 증거연결 (E-002/F-022)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공격방어방법이 되고, 주채무의 시효소멸 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공격방어방법이 되고, 주채무의 시효소멸 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함,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 두 가지로 구성되며, 주채무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 이자채무, 지연손해금채무를 포함함; F:F-006, F-022; E:E-002, E-008
신뢰도	High

C-001: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주채무자인 개성금속에겐 변제자력이 있으므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쟁점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그 집행의 용이성을 증명할 수 있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이미 행사한 권리나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할 수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12/F-002)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그 집행의 용이성을 증명할 수 있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이미 행사한 권리나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할 수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서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그 집행의 용이성을 증명할 수 있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이미 행사한 권리나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할 수 있음,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을 제거하는 특약이며, 원고가 보증인 각자에게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해야 함; F:F-002; E:E-012
신뢰도	Medium

C-002: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다.
핵심 쟁점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4, 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F:F-004, 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2: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단순 보증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다.
핵심 쟁점	연대보증의 경우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한 전액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함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연대보증의 경우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한 전액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연대보증의 경우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한 전액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함; F: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전액 소멸하였거나 잔존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것이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F-###)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책임재산의 감소), 주관적 요건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존재 필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2, F-006, F-022; E:E-002, E-008, E-012
신뢰도	High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채무자 김수경으로부터 정당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할 것이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짐 충족과 증거연결(E-###/F-###)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짐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추정되지 않음. 다만 유일한 재산 매각 또는 무상양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F:F-010; E:E-014
신뢰도	Medium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대물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 매각, 무상양도, 대물변제 제공행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충족과 증거연결(E-014/F-010)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 매각, 무상양도, 대물변제 제공행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 매각, 무상양도, 대물변제 제공행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한 경우 또는 유일한 재산을 담보제공·대물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F:F-010; E:E-014
신뢰도	Medium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4, 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4, 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적정한 대가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일 뿐,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나 사해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충족과 증거연결(E-007, E-017/F-012, F-01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특히 통모가 이루어진 경우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즉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를 의미한다.; F:F-012, F-016; E:E-007, E-017
신뢰도	High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가 이미 공장용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남아있지 않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다. 총족과 증거연결(E-002, E-008, E-012/F-002, F-006, F-022)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다.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다.; F:F-002, F-006, F-022; E:E-002, E-008, E-012
신뢰도	Medium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실수요자로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할 것이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총족과 증거연결(E-007, E-017/F-012, F-01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중개사무소를 통한 통상적 거래로 적정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음; F:F-012, F-016; E:E-007, E-017
신뢰도	High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것이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4, 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4, 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대출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8, E-012/F-002, F-00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현실화된 경우 미발생 채권도 피보전채권 가능; F:F-002, F-006; E:E-008, E-012
신뢰도	High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채무자인 김수경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객관적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의 존재,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제척기간 미경과 충족과 증거연결(E-001/F-017, F-019)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객관적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의 존재,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제척기간 미경과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객관적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의사의 존재, 수익자/전득자의 사해의사, 제척기간 미경과; F:F-017, F-019; E:E-001
신뢰도	Medium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됨 충족과 증거연결(E-###/F-###)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성립시기·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이익을 얻는 채권자에게 있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됨; F: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김수경과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쟁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일한 재산 매각행위나 무상양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충족과 증거연결(E-###/F-###)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일한 재산 매각행위나 무상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일한 재산 매각행위나 무상양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F:F-017, F-019; E:E-001
신뢰도	Medium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김수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선행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충족과 증거연결(E-001/F-020)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F:F-020; E:E-001
신뢰도	Medium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부인할 수 있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총족과 증거연결(E-008, E-012/F-002, F-00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존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2, F-006; E:E-008, E-012
신뢰도	Medium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수익자 김수철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채무자의 선행 사해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이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추정되며, 선의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총족과 증거연결(E-001/F-020)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추정되며, 선의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추정되며, 선의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정상적 거래로 적정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선의 추정; F:F-020; E:E-001
신뢰도	Medium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김수경의 구상금 채무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지 않았거나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5; E:E-005
신뢰도	Medium